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지원 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 | |
|------|------|
| 의안번호 | 2643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 범죄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 산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지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청소년을 유해환경과 탈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과 선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도 및 점검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3)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4)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2024. 11. 15. ~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선도, 주민의 안녕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 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금천지구위원회”라 한다)”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산하에 소속되어 금천구에서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지구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교육사업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금천지구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관찰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전문개정 2009. 5. 28.]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 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청소년선도 대상자의 재범방지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
4.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선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제2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3조(직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 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제4조(임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에 소속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 고문은 지역협의회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촉) 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청소년선도 정책 위원회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제7조(해촉)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

제8조(신임교육) 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화교육) ① 각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화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교육)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장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제11조(설치 및 명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명칭은 ‘○○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구성)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②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소년전담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는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무원, 관할지역 소재 대학의 법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정학·행정학 등 교수, 변호사, 관련 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⑥ 정책위원회 간사는 소년전담검사로 하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운영실장을 부간사로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관장사무)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위·해촉 및 포상 상신
2.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상신
3.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4.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해촉 및 포상 상신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하며, 이 경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포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제1절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제15조(조직 및 명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16조(관장사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정책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2.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교육, 활동 홍보
3. 지역협의회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해촉, 포상 관련 업무
4. 지역사회의 법질서준수 운동,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5.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7조(지역협의회 지위)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8조(관할) 이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은 검찰청 관할구역표에 따른다.

제19조(임원) 지역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5인 이내
3. 감 사 : 2인 이내
4. 운영실장 : 1인

제20조(임원 등의 선출과 임기 등) ① 지역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밝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각각 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선출한다.

② 지역협의회 회장은 부회장과 운영실장을 선임한다. 다만, 부회장의 선임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실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④ 지역협의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새로 선출된 날부터 임기를 계산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① 지역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협의회 임원
2. 지역협의회 회장이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③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22조(고문) ① 지역협의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으로 본다.

②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고문을 선임한다.

제23조(사무실) 지역협의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를 둘 수 있다.

제24조(지검단위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① 각 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들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나 조직운영,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 회의의 의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이 되며, 의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나 전국연합회 사무처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 1/3 이상이 요구하는 때
3.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때

⑤ 의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정책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료, 여성, 교육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구위원회) ① 지역협의회 관할지역 중 도·농 복합지역, 도서지역, 군(郡)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구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구위원회는 소속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행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제27조(조직 및 명칭) ①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전개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지역협의회로 구성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제28조(관장사무)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및 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지원
2.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3.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개진
4.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대외협력, 교육,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5. 전국 규모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6.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임원) 전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5인 이내
3. 감 사 : 2인
4. 사무처장 : 1인

제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과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전국연합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지역협의회 임원 아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한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사무처장

을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4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10년)할 수 있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새로 취임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협의회 회장에게 운영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운영 및 지역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32조(고문) ① 전국연합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고문을 선임한다.

제33조(해촉 의견개진 등) ① 전국연합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품위손상 등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격유지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검증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검증위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은 검증위원회 진상조사결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 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제34조(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의 전개) ① 전국연합회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과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의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추진계획 등 보고) ①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회계년도)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운영규칙) ① 지역협의회는 조직의 구성·운영, 임원의 구성·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전국연합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비치서류)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는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명부 및 연락처
2. 임원명부
3. 회의록
4. 업무일지
5. 예산,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전달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3호,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제3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연임된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 임기의 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시행 2021. 5. 20.] [법무부훈령 제1358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이하 “범죄예방위원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
2. “범죄예방위원회”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등 지도·원호·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5.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제4조(범죄예방위원의 종류와 명칭) ① 범죄예방위원회는 그 활동분야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보호관찰위원회, 법무보호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 제3조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에 규정된 직무
2. 보호관찰위원회 : 제3조 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규정된 직무

3. 법무보호위원 : 제3조 제3호·제5호·제6호에 규정된 직무

② 범죄예방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정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할 지역별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인구 100만 이상 도시지역은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관할 지역이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기타 지역으로서 관할 면적이 2,000km²를 초과하는 지역과 3개 이상 도시를 관할하는 지역의 정원은 인구 1,0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제6조(위·해촉)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다.

제7조(범죄예방위원의 의무) ① 범죄예방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의 조회 등) 범죄예방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의무) 법무부 소속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조직)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자치조직을 둔다.

제11조(심의기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범죄예방위원 위·해촉 및 포상 상신에 관한 사항, 자치조직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타 범죄예방위원 활동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제12조(위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및 심의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범죄예방위원의 구체적 위촉 기준이나 해촉 사유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위원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감독)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58호,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이후 이 훈령의 위임에 따른 각 분야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개정 전의 훈령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조(범죄예방위원의 신분) 이 훈령 시행으로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범죄예방위원의 신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